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사항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1. 대상업체 및 예정처분

업체명 (대표자)	건설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역	예정처분	근거법령
(유)승보종합건설 (김왕열)	토목건축 공사업 (23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24, 304호(초지동)	국세청 사업자 폐업 (2026.06.30.)	등록말소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12호
광문종합건설(주) (양광진)	건축공사업 (10-18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8, 백궁프라자2 505호(정자동)	국세청 사업자 폐업 (2026.06.30.)	등록말소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12호

2. 의견제출

- 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경기도청 북부청사)
나. 의견제출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 전자우편: dudood@gg.go.kr
다. 제출기한: 2026.10.12.(월)
라. 문의사항: 031-8030-3897

3.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가. 귀하는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경기도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대표) :	
	주소(자택)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등록말소	
	당사자	성명(회사명) :
		주소(회사)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법인인감)

경기도지사 귀하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